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23시 47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등록현황 | 3 |
| 수도공사 대행업자 결격사유 | 3 |

수도공사 대행업자 결격사유

2014.04.17 조회수 737 등록자 박종열

| | |
|----------|--|
| 관리번호 |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3 |
| 담당부서 | 수도행정과 |
| 상위법령 | 수도법 제38조 |
| 규칙 |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6조 |
| 유형 | 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
| 등록사유 | 국토도시개발 |
| 법령공표일 | 기존규제 |
| 존속기한 | 2013-02-27 |
| 규제시행/폐지일 | 2013-02-27 |
| 규제내용 | 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. (개정 2013. 2. 27) 1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가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(신설 2013. 2. 27) |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2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56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